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국민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국민연금법」 개정(법률 제17774호, 2020. 12. 29. 공포, 2021. 6. 30. 시행)에 따라 체납정보 제공에 대한 제외 사유,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,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일용·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자격을 확대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일정소득 이상 일용·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(안 제2조)

현행 기준 적용 시 사업장 가입에서 제외되는 일정 소득 이상의 일용·단시간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도록 규정함

나. 신용카드 자동이체에 대한 감액 규정(안 제59조)

법 제89조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자에 대한 감액 대상을 ‘계좌’에서 ‘계좌 또는 신용카드 이체’로 확대하도록 규정함

다. 체납자료 제공 제외 사유, 절차 등 규정(안 제70조의6, 제70조의7 신설)

법 제95조의4 신설에 따라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시 제외 사유, 제공 절차에 대해 규정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다음”을 “1개월 동안의 근로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

제3조제2항제3호 중 “어업”을 “어업 또는 양식업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2호 중 “어업”을 “어업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”으로 한다.

제57조제2항 중 “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(이하 이 조에서 “농업”이라 한다) 또는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(이하 이 조에서 “어업”이라 한다)”을 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(이하 이 조에서 “농업”이라 한다)
2.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마

목에 따른 양식업(이하 이 조에서 “어업 및 양식업”이라 한다)

제57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,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등록한 자,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

제59조의 제목 “(자동 계좌이체를 하는 자에 대한 이익 제공)”을 “(자동 이체를 하는 자에 대한 이익 제공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자동 계좌이체의”를 “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의”로, “자동 계좌이체에”를 “자동이체에”로 한다.

제70조의6 및 제70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0조의6(채납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) 법 제95조의4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95조의4에 따른 사용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채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
2. 법 제95조의4에 따른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납액을 낼 수 없다고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
 - 가.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었을 경우
 - 나.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경우

제70조의7(체납자료의 제공절차) ①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이하 “신용정보집중기관”이라 한다)은 법 제95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체납자의 인적사항·체납액에 관한 자료(이하 “체납자료”라 한다)를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1.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및 주소
2. 요구하는 체납자료의 내용 및 용도

② 건강보험공단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(자기테이프, 자기디스크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자료가 기록·보관된 것을 말한다)로 제공할 수 있다.

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액의 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.

제1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같은 영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”를 “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”로, “여권번호”를 “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”로 한다.

별표 1 제3호제3호다목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, 부모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서, 1)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: 인정 2)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) 당사자의 학업·취업·요양·사업·주거의 형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나)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
--

별표 1 제3호제3호라목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조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, 자녀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서, 1)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: 인

정
2)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
가) 당사자의 학업·취업·요양·사업·주거의 형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
나)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

별표 2의3 제1호너목을 러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너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표 제2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제2호보목을 코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보목부터 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너. 「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감독원

더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

머. 「도로교통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운전면허의 발급·갱신에 관한 자료 및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서류 등 경찰청, 해양경찰청 등이 사건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자료
보.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보험회사가 「보험사기방지특별법」

제6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한 자료

소. 「후견등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후견등기 전산정보자료와 후견등기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

조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

초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,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9조, 제70조의6, 제7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, 제2조제1호 및 동조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손자녀 및 조부모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1 제3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7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) 「국민연금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. 다만,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<u>다음</u>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.	1. ----- ----- --. ----- ----- <u>1개월 동안의 근로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거나</u> <u>다음</u> -----.
가.·나. (생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4.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. 다만,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.	4.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.
가. ~ 다. (생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라.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</u>

	<u>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</u>
제3조(소득의 범위)① (생 략)	제3조(소득의 범위) ①(현행과 같음)
1.~ 2. (생 략)	1~ 2. (현행과 같음)
②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 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(이하 “지역임의계속가입자”라 한다)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,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.	② (현행과 같음)
1.~ 2. (생 략)	1.~ 2. (현행과 같음)
3. 어업 소득 <u>어업과</u>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	3. 어업 소득 <u>어업 또는 양식업과</u>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
제22조(특수 직종 근로자)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직종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 다.	제22조(특수 직종 근로자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선원법」 제3조에 따른 선 박 중 어선에서의 「수산업	2. ----- -----

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
(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
종사한 경우만 해당한다)

② (생 략)

제57조(농어업인의 범위) ① (생
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농업
·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(이하
이 조에서 “농업”이라 한다) 또
는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
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
업(이하 이 조에서 “어업”이라
한다)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
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
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
는 바에 따라 합산하여 농어업
인인지 여부를 결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----- 어업
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2조
제2호에 따른 양식업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7조(농어업인의 범위) ① (현
행과 같음)

② ----- 다음 각
호에 해당하는 업종 -----

-----.

1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
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
농업(이하 이 조에서 “농업”이
라 한다)

2.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
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
어업 및 마목에 따른 양식업
(이하 이 조에서 “어업 및 양

제59조(자동 계좌이체를 하는 자에 대한 이익 제공) 공단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자에게는 자동 계좌이체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에서 빼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금품 또는 경

제59조(자동이체를 하는 자에 대
한 이익 제공) -----

---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
체의 ----- 자동이체에 ----

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<신 설>

-----.

제70조의6(채납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) 법 제95조의4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95조의4에 따른 사용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채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
2. 법 제95조의4에 따른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납액을 낼 수 없다고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
 - 가.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었을 경우
 - 나.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경우

<신 설>

제70조의7(체납자료의 제공절차)

①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이하 “신용정보집중기관”이라 한다)은 법 제95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체납자의 인적사항·체납액에 관한 자료(이하 “체납자료”라 한다)를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1.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및 주소

2. 요구하는 체납자료의 내용 및 용도

② 건강보험공단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(자기테이프, 자기디스크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자료가 기록·보관된 것을 말한다)로 제공할 수 있다.

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

제113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정보의 처리) ① 보건복지부장
관 및 공단(제1호의 경우에는
제25조의6에 따라 공단의 업무
를 위탁받은 직업안정기관을 포
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
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제
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
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
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
정보, 같은 영 제19조제1호, 제2
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
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
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
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액의 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.

제113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정보의 처리) ① -----

---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
제4호까지-----
---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
번호 -----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생 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604